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8323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4.
발 의 자 : 소병훈・박 정・박희승
조계원・용혜인・전현희
이개호・허 영・강준현
부승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 인구 분포,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의 수 등을 평가・분석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지역별・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.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 지정 및 관련 지원 대책 수립 시 실제 의사 인력의 수급 불균형 상태를 정교하게 파악하여 해당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고 지원이 가장 절실한 지역을 선별하여 의료자원의 배분을 최적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에 따른 '의사편재지표'도 고려하도록 하여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밀하게 선별

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2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32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결과”를 “결과 및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9조의2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료취약지 지정·고시에 관한 경과조치)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9조의2에 따른 의사편재지표가 공표되기 전까지 의료취약지 지정·고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의료취약지의 지정·고시) ① (생 략)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·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·고시할 수 있다. ③ ~ ⑤ (생 략)	제12조(의료취약지의 지정·고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결과 및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9조의2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여----------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